

의안 번호	1396	<b>[울산광역시 중구 구청,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9. 28.(목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29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10. 13.(금)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찾아가는 상담 및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“읍면동 복지허브화”와 관련하여
- 나. 복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추진 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를 시행하는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(안 별표)
  - 가. 태화동 주민센터 ⇒ 태화동 행정복지센터
  - 나. 병영1동 주민센터 ⇒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

### 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
- 행정안전부 추진 지침에 따라 복지허브화 시행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